

[첨부1]

(사)한국태양에너지학회 수석부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조 (총칙)

본 규정은 (사)한국태양에너지학회 수석부회장(이하 수석부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수석부회장의 선거인은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출) ②항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 (후보자)

수석부회장 후보자 지원 자격은 (사)한국태양에너지학회 종신회원 및 연회비가 납부된 정회원으로 하며, 이사회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회원으로 이사회에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은 수석부회장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한다.

제5조 (선거관리)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입후보 등록을 공고한다.
2. 후보자는 첨부 1의 등록양식에 따라 3쪽 이내의 등록서류(이력서 및 공약사항)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이력서(인적사항, 학력, 경력, 학회활동, 기타(연구, 수상, 봉사내용 등))
 - 소견서 및 공약사항
3.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확인하여 공고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과 일정을 확정하여 공고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선거인단에게 알리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회 회원에게 알린다.

제6조 (후보자 선거운동)

1.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선거운동 기간 내 금품, 향응, 접대 등 불공정한 행위는 금지한다.

제7조 (선거)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에게 전자우편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방법을 공지한다.
2.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투표한다.
3.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찬반 투표를 한다.
4. 투표결과는 투표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하고 당일 공고한다.

제8조 (당선자의 결정)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개표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2.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출)에 따라 수석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승인한다.
3.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 동수일 경우 동수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단독 후보자의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한다.
5. 제3항에서 후보자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후보 1인을 추천하고 선거인단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선정한다

제9조 (규정 이외의 사항)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